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3. 5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16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2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3. 4. 2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)

가. 제안이유

-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업내용 규정(안 제3조)
-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의 보장 [안 제4조]
- SNS서포터즈 운영(안 제5조)
-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UCC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및 지원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동 조례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의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

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,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,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법체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인터넷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규정

나. 사업내용(안 제3조)

-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업내용 규정

다. 구민참여 보장(안 제4조)

- 인터넷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
- 인터넷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사항, 의견 등은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
- 인터넷매체를 통해 구정홍보에 참여한 자에게 일정범위 보상지원

라. SNS서포터즈 운영(안 제5조)

- SNS서포터즈의 위·해촉 및 역할

마. 사업지원(안 제6조)

-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UCC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및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2.28~3.20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, 영등포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보통신망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,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.
2. “인터넷매체”란 인터넷방송, 블로그, 트위터,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
3. “SNS”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사업내용)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구정소식, 의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2. 교육, 문화, 예술,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홍보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민참여 보장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한 사항, 의견 및 구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제5조(SNS 서포터즈 운영) ①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SNS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영등포구 SNS 서포터즈 등은 구정에 이해와 관심이 많고, SNS매체를 활발히 운영해 온 사람중에서 위촉하고,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

③ 영등포구 SNS서포터즈 등은 각종행사, 구정소식 전달, 위기 재난사항 전파 등을 임무로 한다.

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할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3.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⑤ SNS서포터즈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SNS서포터즈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사업지원) ① 구청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UCC공모전
2.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